

# 상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8

특 허 청  
(상 표 심 사 정 책 과)

법제처 심사 전

## 1. 개정이유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상표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81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했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및 정비(안 제96조, 제97조, 제98조)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 및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 정비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 반영(안 제101조)

상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최소한의 제재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몰해제하고,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는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므로 규제대상이 아님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안 제25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8.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동일인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되어 적법한 1개 이외의 나머지 서류인 경우

제96조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97조와 제98조 중 “법 제217조 제3항”을 “법 제217조 제4항”로 한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p> <p>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건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한다.</p> <p>1. ~ 18. (생략)</p> <p><b>19. &lt;신설&gt;</b></p> <p>제96조(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p> <p>① ~ ④ (생략)</p> <p><b>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및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b></p> <p><b>⑥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특허청장의 시정요구에</b></p>	<p>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p> <p>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류·건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한다.</p> <p>1. ~ 18. (현행과 같음)</p> <p><b>19. 동일인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되어 적법한 1개 이외의 나머지 서류인 경우</b></p> <p>제96조(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등)</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b>⑤ &lt;삭 제&gt;</b></p> <p><b>⑥ &lt;삭 제&gt;</b></p>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제97조(전자화 대상 서류) 법 제217조제3  
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  
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상표등  
록출원, 심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및  
상표원부를 말한다.

1. ~ 4. (생략)

제98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  
청) ①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217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기  
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2016  
년 1월 1일

제97조(전자화 대상 서류) 법 제217조제4  
항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98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  
청) ① 특허청장이나 -----  
----- 법  
제217조제4항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삭 제>

1. <삭 제>

2. 제96조에 따른 상표문서 전자화기관  
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2016년 1월 1  
일

2. <삭 제>